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6
----------	----

제출년월일 : 2010. 10. 11.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이유

- 가.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시 지역개발채권 요율을 조정(배기량별 차등 적용
 - 6% 정율)함에 따라 도시철도공채 매입요율도 조정하여 시민 부담 경감 및 지방세 세수 증대
- 나. 「도시철도법」에 따라 “공채”를 “채권”으로 명칭 변경

□ 주요내용

- 가. 「도시철도법」에 따라 “공채”를 “채권”으로 명칭 변경
(안 제1조·제2조·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4조 제1항 및 제2항)
- 나. 승차정원 6명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 등록시 채권매입요율을 조정함(안 제3조)
 - 1) 신규등록
 - 가)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 :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
 - 나)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
 - 다) 배기량 2,000cc 이상 :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

□ 참고사항

- 가. 실·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1부.
-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1부.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시철도법”을 “「도시철도법」”으로, “도시철도법시행령”을 “「도시철도법시행령」”으로,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이하 “도시철도공채”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으로 한다.

제2조 중 제목 “(공채의 발행한도)”를 “(채권의 발행한도)”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도시철도공채”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도시철도채권”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제목 “(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을 “(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의 “도시철도공채”를 “도시철도채권”으로, “도시철도법·도시철도법시행령”을 “「도시철도법」·「도시철도법시행령」”으로,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교통부령 제655호)”를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으로 한다.

①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 별표 2에서 정한 매입대상 및 그 금액으로 한다.

1. 승차정원 6명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 신규등록

- 가)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 :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
- 나)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
- 다) 배기량 2,000cc 이상 :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시철도공채”를 각각 “도시철도채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로,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이하 “도시철도공채”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도시철도채권”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철도공채”를 “도시철도채권”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법 제12조 및 도시철도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도시철도공채(이하 “도시철도공채”라 한다)를 발행함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도시철도법」 ----- ----- 「도시철도법시행령」 -----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 -----</p>
<p>제2조(공채의 발행한도) 도시철도공채의 연도별 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인천광역시장이 정한다.</p>	<p>제2조(채권의 발행한도)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이하 “도시철도채권”라 한다)-----</p>
<p>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 도시철도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대상 및 그 금액으로 한다. 다만,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p>	<p>제3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 별표 2에서 정한 매입대상 및 그 금액으로 한다.</p>
<p>〈신 설〉</p>	<p>1. 승차정원 6명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p>
	<p>1) 신규등록</p>
	<p>가)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 :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p>
	<p>나)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p>
	<p>다) 배기량 2,000cc 이상 :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p>
<p>1. 각종 건설공사 도급계약시는 건설공사 도급계약(도시철도채권발행자, 도시철도 건설자, 경영자의 발주분에 한한다) 금액의 100분의 5를 매입하여야 한다.</p>	<p>2. (중전의 1호와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2.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경영자와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물품구매계약(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단가계약 물품과 국제입찰에 의하여 구입하는 물품 구매계약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액 또는 물품계약액의 100분의 2를 매입하여야 한다.</p>	<p>3. (종전의 2호와 같음)</p>
<p>3. 도급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 건설공사로 인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p> <p>② 도시철도공채의 매입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도시철도법·도시철도법시행령 및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교통부령 제65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p>	<p>4. (종전의 3호와 같음)</p> <p>② 도시철도채권----- -- 「도시철도법」·「도시철도법시행령」-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 -----</p>
<p>제4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 도시철도공채는 원리금을 발행일로부터 5년거치후 일시상환한다. 단, 실제 매출일로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p> <p>② 도시철도공채의 이율은 연 2.5퍼센트 복리로 한다.</p>	<p>제4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① 도시철도채권은 ----- ----- -----</p> <p>② 도시철도채권----- -----</p>

실 · 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 ○ ○ ○ ○ ○
실 · 국별 의견수렴결과			
협의개요	실 · 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기간 : '10. 9. 6~ 9. 27 ○내용 : 의견수렴		“의견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기간 : '10. 9. 6~ 9.27 ○내용 : 시보 및 인터넷 게재		“의견없음”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취사항

관련법령	<input type="checkbox"/> 도시철도법 제12조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제13조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input type="checkbox"/>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등)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도시철도법

제12조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시철도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消滅時效)는 상환일(償還日)부터 기산(起算)하여 5년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해부터 그 연도의 도시철도 운영수입금이 그 연도의 도시철도 운영비용(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한다)을 최초로 초과하는 해까지 발행할 수 있다.

제13조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건설도급계약(建設都給契約)을 체결하는 자

4.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건설·운영에 필요한 건설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영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30]

[별표 2] <개정 2009.6.30> [유효기간 : 2012.12.31, 비고란 제2호카목]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표(제12조제1항 관련)

매입대상	매입 금액
1. 자동차등록(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1) 신규등록	
가) 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9
나) 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2
다) 배기량 2,000cc 이상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0
라) 다목적형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2) 이전등록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
나. 사업용 승용자동차(사업용 다목적형 자동차와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다. 사업용 다목적형 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
라.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1) 대형버스(26인승 이상인 버스)	
가) 신규등록	
(1) 비사업용	대당 1,300,000원
(2) 사업용	대당 435,000원
나) 이전등록	
(1) 비사업용	대당 435,000원
(2) 사업용	대당 145,000원
2) 소형버스(16인승 이상 25인승 이하인 버스)	
가) 신규등록	
(1) 비사업용	대당 650,000원

(2) 사업용	대당 215,000원
나) 이전등록	
(1) 비사업용	대당 215,000원
(2) 사업용	대당 70,000원
3) 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승용자동차와 소형버스(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버스)	
가) 신규등록	
(1) 비사업용	대당 390,000원
(2) 사업용	대당 130,000원
나) 이전등록	
(1) 비사업용	대당 130,000원
(2) 사업용	대당 45,000원
마. 화물자동차	
1) 대형화물자동차(4.6톤 이상인 자동차)	
가) 신규등록	
(1) 비사업용	대당 650,000원
(2) 사업용	대당 215,000원
나) 이전등록	
(1) 비사업용	대당 215,000원
(2) 사업용	대당 70,000원
2) 소형화물자동차(2.5톤 이상 4.6톤 미만인 자동차)	
가) 신규등록	
(1) 비사업용	대당 390,000원
(2) 사업용	대당 130,000원
(나) 이전등록	
(1) 비사업용	대당 130,000원
(2) 사업용	대당 45,000원
3) 소형화물차(2.5톤 미만인 자동차)	
가) 신규등록	
(1) 비사업용	대당 195,000원
(2) 사업용	대당 65,000원
나) 이전등록	
(1) 비사업용	대당 65,000원
(2) 사업용	대당 20,000원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750,000원
3.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매매업	
가. 자동차정비업(자동차종합정비업만 해당한다)	
1) 신규등록	450,000원
2) 이전등록	150,000원

나. 자동차매매업	
1) 신규등록	300,000원
2) 이전등록	100,000원
4. 건설기계등록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5. 식품영업 허가	
가. 유흥주점영업	
1) 신규허가	2,100,000원
2)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1,050,000원
나. 단란주점영업	
1) 신규허가	1,500,000원
2)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750,000원
6. 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숙박업만 해당한다) 등록	
가. 신규등록 및 명의변경등록	등록된 객실당 30,000원
나. 장소 변경등록	등록된 객실당 15,000원
7.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 유원시설업의 허가	
가. 신규허가 및 신규등록	300,000원
나.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및 변경등록	150,000원
8. 사행행위영업 허가	
가. 복표발행업 및 현상업	750,000원
나. 그 밖의 사행행위영업	
1) 신규허가	900,000원
2)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450,000원
9. 체육시설업 등록(골프장업만 해당한다)	
가. 신규등록	7,500,000원
나. 장소 이전등록	3,750,000원
10. 업종 소지 허가	45,000원
11. 수렵면허	
가. 제1종 수렵면허	150,000원
나. 제2종 수렵면허	75,000원
12. 주류판매업 면허(도매업만 해당한다)	150,000원
13. 주류제조업 면허	450,000원
14.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가. 건설공사 도급계약(도시철도채권 발행자와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의 발주분만 해당한다)	도급액의 100분의 5 이내
나.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하는 도시철도건설·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 및 물품구매계약(조달청장이 관리하는 단가계약물품과 국제입찰에 의하여 구입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용역계약액 또는 물품구매계약액의 100분의 2 이내
15. 토지형질 변경허가	3.3제곱미터당 30,000원
16. 카지노업 허가	
가. 신규허가	4,500,000원
나. 영업소의 위치 변경허가	2,250,000원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 가. 국가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 라. 금융기관
 - 마. 주한 외국정부기관
 - 바.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의 일부를 면제한다.
 - 가. 다음의 경우에는 위 표 중 제1호 및 제4호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의 장으로부터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자금 또는 축산자금에서의 융자금임을 확인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그 회원조합 또는 단위조합의 장으로부터 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어업자금에서의 융자금임을 확인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 3)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등록된 불교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대상 항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외국인
- 2) 경제개발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그 소속 단체
-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고보조 또는 지방비의 보조를 받는 법인
-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 5) 언론기관
- 6)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
- 7) 대중교통수단에 사용되는 시내버스·마을버스 및 농어촌버스의 운송사업자와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 8) 「상법」에 따라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되는 법인으로서 그 합병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는 자
- 9) 합병회사에서 합자회사로, 합자회사에서 합병회사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또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그 조직변경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는 자
- 10)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現物出資)하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자만 해당한다)

다. 도시철도채권을 이미 매입했으나 다른 이유로 다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중 높은 기준의 매입액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게 하되, 낮은 기준의 매입액의 도시철도채권을 먼저 매입한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기준의 매입액과의 차액을 추가하여 매입하게 한다.

- 1) 같은 사업 또는 같은 목적물일 것
- 2)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 3) 동일인일 것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중 제1호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

- 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하여 자기 명의로 신규등록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는 경우
- 2)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당시의 소유자가 회수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

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의 건설·운영과 관련한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금액이 각각 1천만원 미만이면 위 표 중 제14호나목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가 같은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위 표 중 제1호가목·라목3)·마목3)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 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사.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위 표 중 제15호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

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위 표 중 제15호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

자. 위 표 제14호의 건설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 상당액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을 면제한다.

차. 시·도지사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입대상 항목의 일부를 지정하여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위 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백만원(매입하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3. 도시철도채권의 최저 매입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2천500원 미만은 버리고, 2천500원 이상은 5천원으로 올린다.